

#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의거 '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나. 총사업비 : 1,200,000천원 (구 재난관리기금 50%, 시 재난관리기금 50%)

다. 침수로 인한 피해 : 없음

라. 추진실적 및 성과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설치 현황			비고
		물막이판 (개소)	역류방지시설 (개소)	계	
합 계	1,200	1,839	1,332	3,171	
가산동	148	207	281	488	
독산1동	284	359	734	1,093	
독산2동	100	154	53	207	
독산3동	111	181	16	197	
독산4동	75	121	20	141	
시흥1동	171	301	67	368	
시흥2동	3	5	-	5	
시흥3동	43	76	14	90	
시흥4동	150	239	108	347	
시흥5동	115	196	39	235	

※ '23년 당초 발주 계획 1,330개소(물막이판 930개소, 역류방지시설 400개소)  
대비 물막이판 909개소 역류방지시설 932개소 추가 설치

### 3. 참고사항

#### 가. 향후계획

- 1) 2024. 1. : 침수방지시설 계획 수립 및 공사 발주
- 2) 2024. 2. : 공사 계약 및 착공
- 3) 2024. 3. ~ 5. :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우기전 집중 설치 및 홍보 추진
- 4) 2024. 12. : 공사 준공

#### 나. 관련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25조의2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제3조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 (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